

2023 개정판

일터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 나침반

건설업



일터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정보

2023 개정판

안전보건 나침반

건설업

안전보건 나침반은

일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단의 **주요 사업안내** 및 **직업건강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사업안내	0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05
	0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0
	03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16
	0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19
	05 위험성평가 인정	21
	06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24
	07 직업건강분야 지원 사업	26
	08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31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0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
02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36
03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38
04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41
05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44
06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47
07 안전보건교육		50
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4
0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6
10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		57
11 안전·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61
12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 지급·착용		62
1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교육		64
14 근로자 건강진단		67
15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 진행 절차		68
1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69
17 휴게시설 설치의무		72
3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0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75
	0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80
	03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81

4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작업공종

01 철근콘크리트 공사(떨어짐)	83
02 철근콘크리트 공사(무너짐)	84
03 건설기계 관련 작업(부딪힘, 끼임, 맞음)	85
04 비계 등 가설구조물공사(떨어짐, 무너짐)	87
05 철골조립공사(떨어짐, 맞음)	88
06 조적, 미장, 방수공사(떨어짐, 산소결핍)	89
07 화물운반 작업(교통사고)	90
08 토공사(무너짐, 부딪힘)	91
09 지붕공사(떨어짐, 물체에 맞음)	92
10 외부 도장공사(떨어짐)	93
11 상·하수도 공사(무너짐, 부딪힘, 맞음)	94

5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대책

01 철근콘크리트 공사	97
02 철골조립 공사	97
03 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	98
04 조적·미장·방수 공사	98
05 도로보수 작업	99
06 건설기계 관련 작업	99

6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01 안전보건공단	101
02 고용노동부	102
03 근로복지공단	103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사업안내



- 0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05
 - 0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0
 - 03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16
 - 0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19
 - 05 위험성평가 인정 21
 - 06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24
 - 07 직업건강분야 지원 사업 26
 - 08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31
-

0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을 작성·검토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와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 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자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

자체심사자 기준 (1인 이상 참여)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포함)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다음의 일정규모 공사는 위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기준에 맞는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를 받고 공사 착공 전날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과 첨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의 심사로 갈음 가능

지도사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 대상 <small>(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 높이가 50m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가목]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m 이하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이 가능한 지도사 기준 <small>(고용노동부 고시)</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 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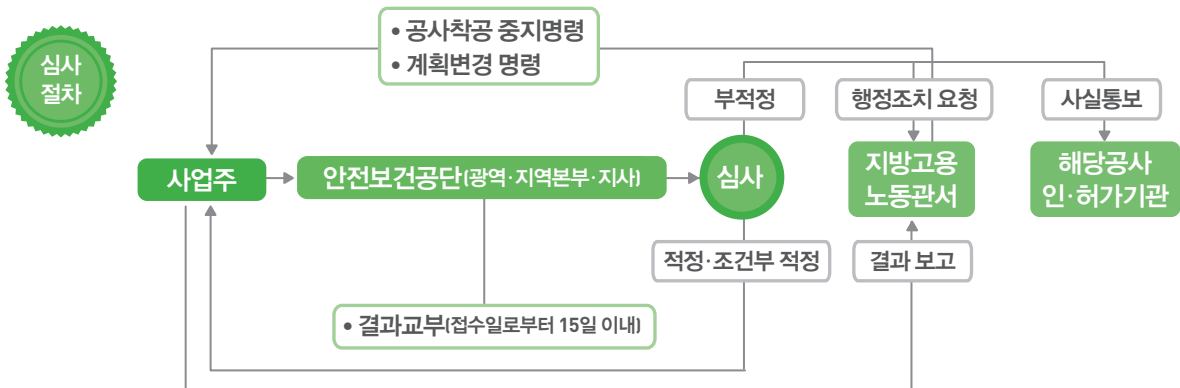
심사 및 절차

심사 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 통보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심사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 통보



확인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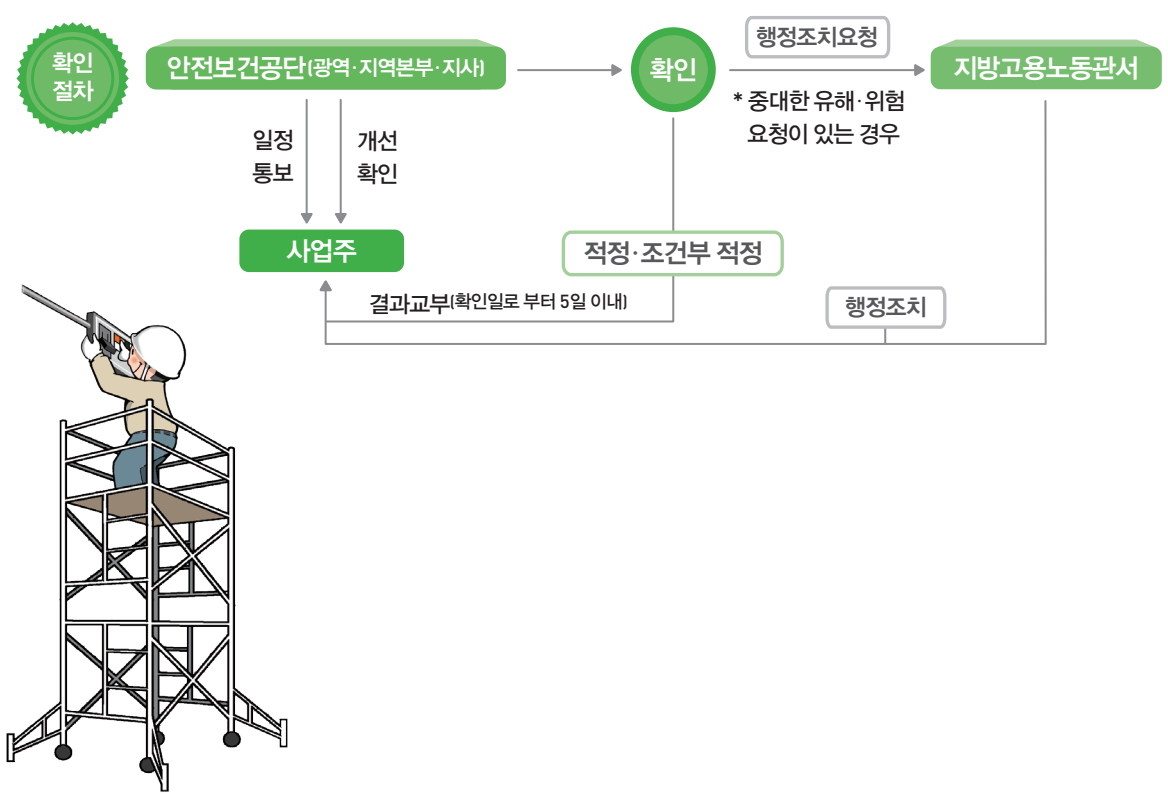
확인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 실시**

- 확인사항
 -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 부합 여부
 -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여부
 - ③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자체 확인 실시

- 공사 중 사망재해 발생 시 공단이 확인 실시
- 사망재해 중 다음 재해는 제외
 방화,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제3자 과실, 기타(야유회, 체육행사, 취침, 휴식 등) 중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

지도사 평가결과서 제출로 공단의 심사를 갈음한 현장은 사업주가 지도사 평가결과서의 첨부서류인 세부 평가 내용에 기재한 확인 예정일까지 지도사 확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의 현장방문을 생략하고 대체 가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 서류

* 계획서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①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 서식)
- ②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 ③ 전체 공정표
-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 서식)
- ⑤ 안전관리 조직표
- ⑥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작업 공사 종류	첨부서류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구조물공사 다. 마감공사 라. 기계 설비공사 마. 해체공사	가.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가. 가설공사 나. 단열공사 다. 기계 설비공사	나. 위험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사용시의 안전작업 계획
다리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다리하부(하부구조) 공사 다. 다리상부(상부구조) 공사	
터널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 공사	
댐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공사	
굴착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 지보공 공사	

심사 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 (원)
종류	규모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 5개소 미만	44,000
	나.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 10개소 미만	58,000
	다.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 10개소 이상	67,000
2.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대상 교량 1개소	44,000
	가. 길이 50m	44,000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나. 길이 500m 미만	58,000
	다. 길이 500m 이상	67,000
	대상 댐 1개소	58,000
4.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44,000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58,000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67,000
5.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44,000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58,000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67,000

0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의 목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제13조의8

건설현장 의무적용

- 공사규모(금액)에 관계없이 전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2014년 12월 1일 이후)

교육실시 기관

- '12. 1. 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찾는 메뉴 → (건설업 기초 교육) → 교육기관 등록현황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등록현황
-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APP)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5]에 2호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애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총 교육시간		4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절차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 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

과태료 : 교육 미 실시 근로자 수 × 위반 회차의 과태료*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50만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 조회 및 발급(예)



안전보건 교육포털 이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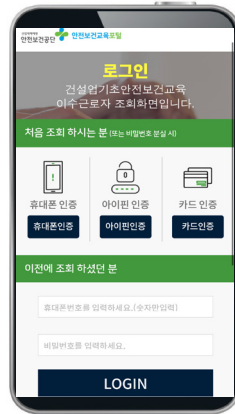
스마트폰 이용시



안전보건교육포털(koshats.or.kr) 접속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클릭 → 이수정보조회

안전보건공단(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실행
좌측 하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조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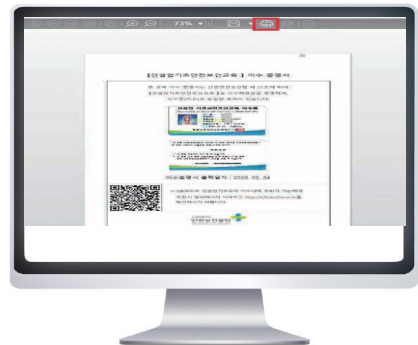
"이수자 조회"



본인인증 로그인

이수증 확인

본인인증 로그인



이수증 출력

* 이수증은 교육생 본인이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또는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에 접속하여 확인가능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Q 건설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확정한 직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일을 하도록 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도급인(원청업체)과 수급인(하청업체) 중 누구인가요?

-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Q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급인(원청업체)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하청업체)인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등에 대한 협의 포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당해 교육장에서 이수증을 즉시 발급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 등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지한 이수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 정보 조회 → 휴대폰 본인인증 후 조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실·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09년~'11년(3년간) 중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도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09년~'11년도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12. 6. 1일 부터 시행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이수증(플라스틱 카드 형태)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교육이수증에는 사진이 인쇄되므로 '09년~'11년도 교육이수자는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12년 이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인근 안전보건공단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 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 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방문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적정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 인원을 1회 50명 이내에서 연면적 기준에 적절한 교육 인원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강의실 연면적에 따른 교육생 편성 기준

가 60㎡ 이상 : 20명 이내	나 80㎡ 이상 : 30명 이내	다 100㎡ 이상 : 40명 이내	라 120㎡ 이상 : 50명 이내
-----------------------------	-----------------------------	------------------------------	------------------------------

Q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정기교육이나 특별안전보건교육, 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은 기존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교육”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면 당해 업무에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Q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수증은 교육생 본인이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or.kr) 또는 모바일 APP(위기탈출 안전보건)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이수증에 인쇄된 QR코드 접속을 통해 이수증 조회와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구비하여야 할 것이 있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제4호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전용의 강의실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교육생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 교육은 안전 및 보건강사가 전문 분야별로 각각 강의를 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품 및 방음·온도·조명 등의 적절한 교육환경을 확보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가항목 및 나항목의 인원 3명이 모두 있어야 하나요?

- 인력기준 가 또는 나 항목의 건설안전분야에 해당하는 인력: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교육
- 인력기준 가 항목 1명 이상, 나 항목 2명 이상(총 3명 이상 상시근무)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 2 ①항 5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 2 ①항 1호]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등록현황을 선택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과 교육기관별 교육 계획,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서 추락(떨어짐)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의 일부 정액비용,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65%, 현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떨어짐)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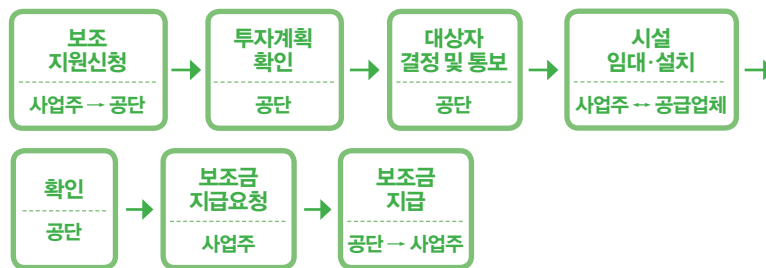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보조·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규칙)

사업예산 및 시행기간

- 사업예산 : 714.7억원(2023년)
- 시행기간 : 연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 대상·조건 및 대상설비 등

보조 대상(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떨어짐)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

보조 제외 대상

-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조 대상·조건 및 대상설비 등



보조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지원 가능(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 전문건설업체(하도급)는 설치·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만 보조 가능
-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공단이 정한 조건표에 따름)
 조건표 : 클린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추락방지 안전시설 > "23년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건설클린) 신청 게시 안내" 참고
- *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 공사금액별 공단 판단금액의 65%~50%까지 지원
 공사금액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 지원

설치기간

- 설치기간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투자완료(설치 확인 요청 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완료 후 공단에 확인요청
 - * 보조대상자의 연장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대상 설비

- 시스템비계*
 - 주요 구성항목 : 수직·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 시스템비계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떨어짐(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품목	규격 및 기준	사용 장소
낙하물방지망 (플라이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다리 : 폭30cm이상 x 길이2m 이상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현장 등
추락방호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철골조립, 공장 신축, 개·보수 현장 등
수직보호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외부 비계 외측에 설치
사다리형 작업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제품 • 안전인증(S마크) 제품 • 작업발판 최대 높이 3.5m이하 제품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어려운 장소

※ 단, 지붕·철골 공사 등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은 추락방호망만 별도 지원 가능

보조 대상·조건 및 대상설비 등

사업참여 방법

- 보조지원을 받으려는 건설 사업주
 - 클린사업장조성지원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온라인신청또는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 신청양식 : 클린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참여사업장)



0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공사를 하는 동안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토목공사 외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법적 근거 및 현장 비치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경우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이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

-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 대가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제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1차 위반 : 200만원, 2차 위반 : 250만원, 3차이상 위반 : 300만원

기술지도 내용

- 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예방 및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 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 주도 총괄· 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공사기간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 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60조, 별표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05

위험성평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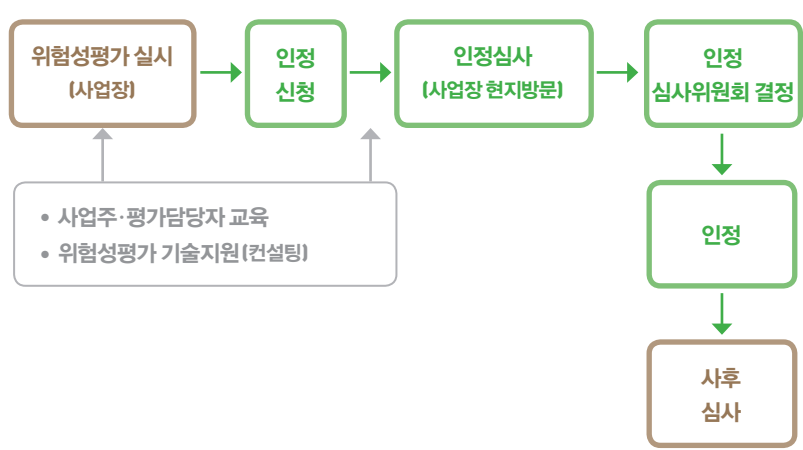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 * 컨설팅 지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에 등록된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재인정)신청서 및 「위험성평가」 관련 공단 교육·컨설팅 신청서는 「위험성평가」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 → 게시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인정
[]재인정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험성평가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재지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로자 수 (총 공사금액)	[명 억원]
기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급사업장 명단(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 수, 연락처 등) 등을 기재(별지로 첨부 가능)		

우리 사업장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였으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 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성명, 이메일,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 시 회원 가입 및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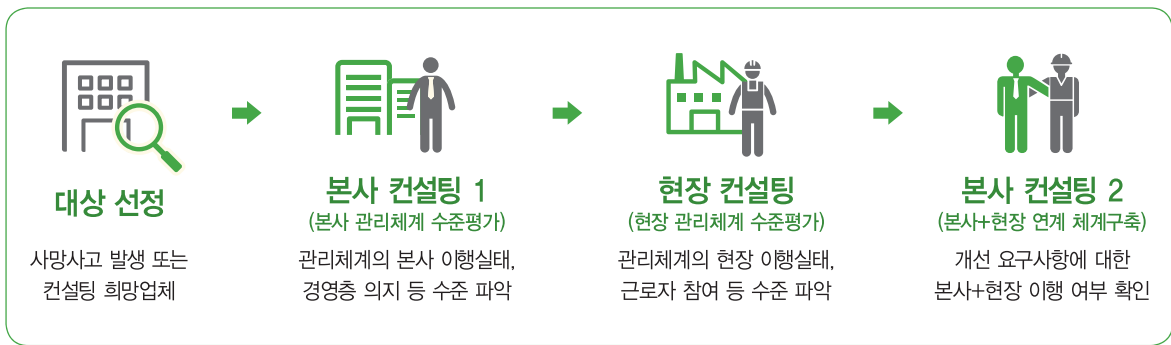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24.1.27.)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취약하거나, 구축 희망업체(시공능력순위 200위 밖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요소 확인·개선을 통해 본사와 자율안전 관리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전사적 사망사고 예방체계 확립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능력순위(토건) 1~200위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등 안전관리 취약 또는 컨설팅 희망업체 등
지원 절차 (공단직접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이행되도록 현장과 본사를 연계한 단계적 컨설팅 실시 3회(본사 2회, 현장 1회) 방문 지원 경영층 면담 1회 실시 원칙
지원 절차 (민간위탁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전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이행되도록 현장과 본사를 연계한 단계적 컨설팅 실시 -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행의지 고취*를 위해 7회(본사 4회, 현장 3회) 방문 지원 * 1단계 중 1회, 최종 방문 시 1회 등 경영층 면담 2회 실시 원칙

지원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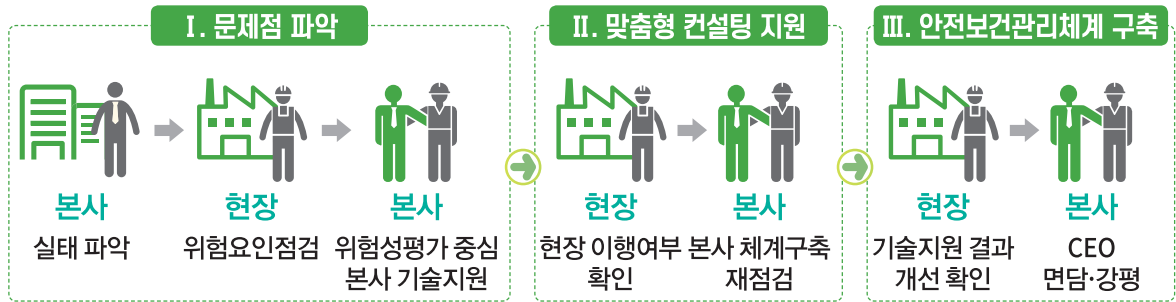
공단수행 컨설팅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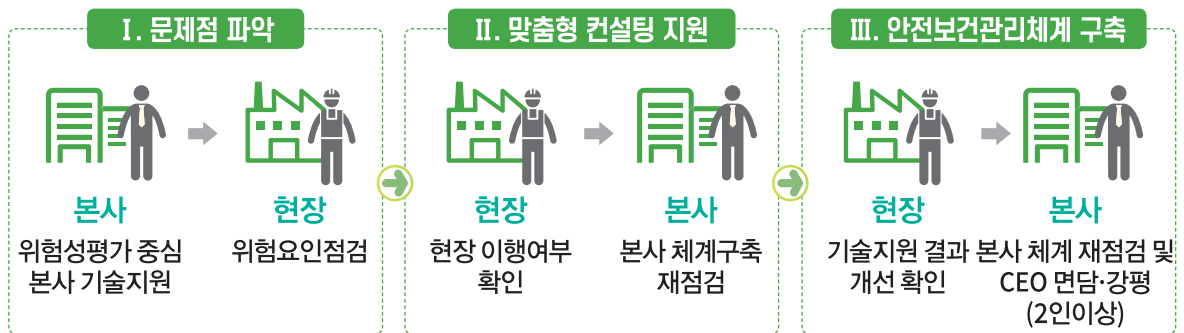
지원방법 및 내용

민간위탁수행 컨설팅 진행절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지도사, 기술사 자격 보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보유자]



문의처

공단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공단본부	건설안전실	052.703.0689	(우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서울광역본부	건설시스템팀	02.6711.2852~2855	(우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건설안전팀	02.6711.2870~2877	
부산광역본부	건설안전부	051.520.0592~0590	(우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광주광역본부		052.949.8791~8797	(우 62364)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대구광역본부		053.609.0532~0538	(우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층
인천광역본부		032.510.0581~0588	(우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경기지역본부		031.259.7132~7145	(우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3층
대전세종광역본부		042.620.5621~5628	(우 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3층

07

직업건강분야 지원 사업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질식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인식 부족, 질식 재해 방지 조치 등이 미흡하여 재래형 재해인 산소결핍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질식재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무상 대여,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밀폐공간 정의

-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지 않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애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 밀폐공간은 반드시 산소 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등의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 예방



① 콘크리트 양생장소



② 하수도 맨홀



③ 오폐수처리장 정화조



④ 폐수침전조



⑤ 지하핏트

사업대상

-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등의 밀폐공간 보유사업장(밀폐공간 작업장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별표 18에서 규정)

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사업내용

-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집수조, 오폐수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장소로 방문하여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① 무상지원 내용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현장교육(장비사용법, 환기실시법, 응급시구조방법)
- 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상대여(5일 대여 및 회수)

② 대여장비 종류

- 가스농도 측정기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환기팬 : 외부공기를 밀폐공간 내부로 넣거나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
- 환기마스크 : 깨끗한 외부공기를 작업자에게 공급

③ 신청방법

대여신청 전화(1644-8595) → 신청사업장과 협의 후 사업장(현장)이 원하는 시간 장소로 방문 → 밀폐공간 내부 측정 → 장비 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대여 → 사업장(현장)과 협의 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 후 회수

건설 일용직 근로자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내용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비용지원 목적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내용

배치전·특수건강진단 1, 2차 검진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건설 일용직 근로자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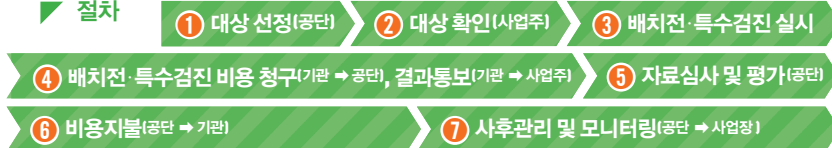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181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22]
 - 벤젠, 톨루엔, 메탄올 등 유기화합물 109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 20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금속가공유 1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곡물분진, 광물성 분진, 석면분진 등 분진 7종
 - 소음, 진동 등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지원신청 및 대상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재정지원) 또는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절차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목적은?
 -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분소)”의 설치·운영으로 근로자 질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 센터(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센터(분소) 이용 시 가능한 서비스 내용은?
 - 근로자 건강(질병)상담실 운영(근로자 건강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등)
 -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실 운영 -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운영
 - 뇌·심혈관질환 예방실 운영 - 심리상담실 운영



전액 무료



센터별 상이
탄력적 운영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 센터(분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 전문가,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직무스트레스 상담 전문가 등 직업건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희망하는 사업장은 단체 예약시 이동 건강상담 및 집단 상담 가능

• 어디에 가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전국 23개 센터 및 21개 분소 운영

근로자건강센터 현황

센터(분소)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군포분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점 3층 (군포분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군포IT밸리 A동 1202호	www.gswhc.or.kr	031.364.7680 (031.8086.7195)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인천부평분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인천부평분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지하1층	www.icwhc.or.kr	032.260.3661 (032.528.1155)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산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광주광산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www.gjwhc.or.kr	062.955.6497 (062.941.6497)
대구 근로자건강센터 (서대구분소) (대구달성분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서대구분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21길 33 (대구달성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www.dgwhc.or.kr	053.585.5501 (053.584.2406) (053.617.9701)
경남 근로자건강센터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창원SK테크노파크 테크동 11층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316호	www.knwhc.or.kr	055.713.2400 (070.4270.0240)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중구분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2층 (서울중구분소)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302호	www.suwhc.or.kr	02.6947.5700 (02.2268.6497)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성남분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성남분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한하이텍스 A동 지하1층 127호	www.gdwhc.or.kr	031.739.9301 (031.698.2990)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울산북구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울산북구분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북구오토밸리복지센터 4층	www.uswhc.or.kr	052.201.9960 (052.288.7772)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김포양촌분소) (김포고촌분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3층 (김포양촌분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메카존 나동 243호 (김포고촌분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58번길 105-1유호빌딩 2층 204호	www.bcwhc.or.kr	032.329.9161 (031.999.7602) (031.998.9165)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청주미래누리터 5층	www.cbwhc.or.kr	043.218.9415
충남 근로자건강센터 (아산분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J빌딩 2층 (아산분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05호	www.cnlhc.or.kr	041.522.8993 (041.547.7993)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한신에스메카 1층)	www.tjwhc.or.kr	042.936.9571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근로자건강센터 현황

센터(분소)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양산분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층 (양산분소)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들3길 2 1층	www.bswhc.or.kr	051.329.7300 (055.385.7301)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구미분소)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층 (구미분소)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센터 213호	www.gbwhc.or.kr	054.475.2511 (054.465.2511)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평택분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피어빌딩 C동 2층 (평택분소)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성은상가 1층	www.gnwhc.or.kr	031.205.8960 (031.663.8953)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층	www.jdwhc.or.kr	061.692.9640
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리팩토리 대불 관리동 2층	www.jnswhc.or.kr	061.462.2900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성동분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1406호 (서울성동분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308호	www.sgwhc.or.kr	02.2093.2650 (02.6077.7500)
경산 근로자건강센터 (영천분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근로자복지회관 2층 (영천분소)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층	www.gsswhc.or.kr	053.853.8579 (054.338.8541)
전주 근로자건강센터 (완주분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층 (완주분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www.jjwhc.or.kr	063.211.9988 (063.262.7733)
강원 근로자건강센터 (춘천분소)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경제진흥원 604호 (춘천분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내	www.강원근로자건강센터.kr	033.745.7289 (033.262.2788)
제주 근로자건강센터 (연동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연동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www.jejuwhc.or.kr	064-752-8961 (064-745-8961)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 (남양주분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검준공단지원센터 4층 (남양주분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진관프라자 2층	www.ggbbwhc.or.kr	031-858-9030 (031-572-9032)

08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대형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등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 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 일상·직장 생활 복귀 도모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 관리 • 필요 시 전문적인 치료 연계
일하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운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별 상이(탄력적 운영)
이용 가능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3개 센터 운영

직업트라우마센터 현황

센터명	소재지	담당지역	전화번호
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근로자건강센터 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북부)	032-818-3660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서울특별시(남부)	032-329-9565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364-7603
경기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평창군 등 남부지역	031-739-9301
대전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대전근로자건강센터 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역,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936-9573

이용 가능한 장소

직업트라우마센터 현황

센터명	소재지	담당지역	전화번호
대구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070-8827-4853
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	062-955-6497
경남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내)	경상남도 전역	055-713-2401
경기북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등 북부지역	070-4139-2607
울산직업트라우마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울산근로자건강센터 내)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052-201-9963
전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전주근로자건강센터 내)	전라북도 전역	063-211-9988
제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근로자건강센터 내)	제주도 전역	064-752-8986
충남직업트라우마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충남근로자건강센터 내)	충청남도 전역	041-566-8993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 0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 35
- 02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36
- 03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38
- 04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41
- 05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44
- 0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47
- 07 안전보건교육 50
- 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54
- 0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산업안전보건위원회 56
- 10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 57
- 11 안전·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61
- 12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 지급·착용 62
- 1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교육 64
- 14 근로자 건강진단 67
- 15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 진행 절차 68
- 1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69
- 17 휴게시설 설치의무 72

01

사업장 산업안전 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

산업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정에 불행을 안겨주고 기업과 국가에는 인력손실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 막대한 경제손실을 안겨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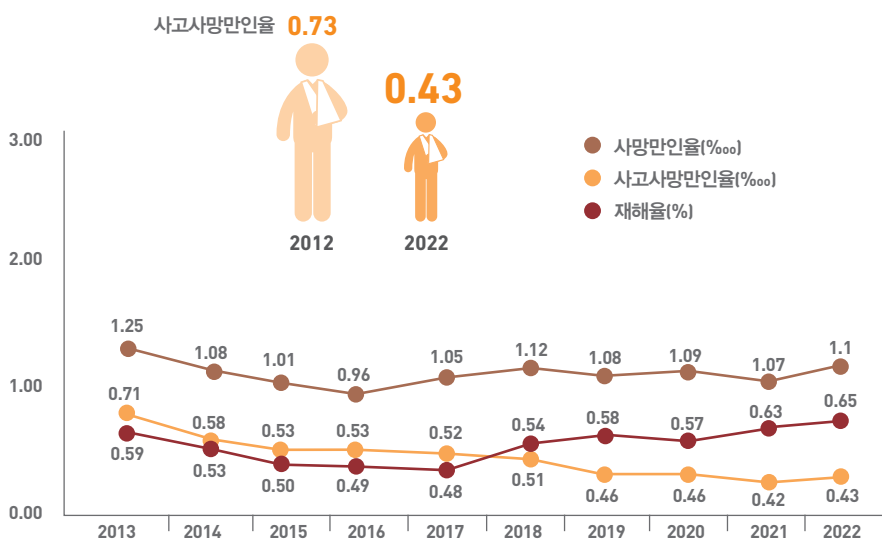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며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란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 발생현황

- 전체 산업에서 사망자수 2,223명·재해자수 130,348명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으로서 1개 법률, 1개 시행령, 3개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규칙

02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 내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재해기록·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유해·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시켜야 합니다.
-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지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는지, 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안전하게 방호조치 등을 하였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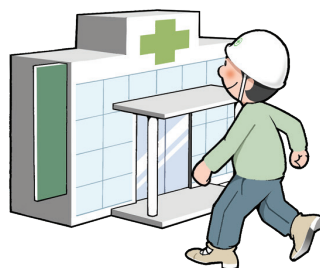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의무사항

-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준수사항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❶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 ❷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및 덮개 설치
- ❸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설치
- ❹ 지반의 굴착장소 등에는 굴착면의 안전기울기 유지,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 ❺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에 따라 조립
- ❻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12.7.1부터)
- 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목적(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맞게 집행
- ❽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선임, 업무수행 및 관련 서류 비치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 ❶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❷ 급박한 위험상황 시 작업을 중지한 후 대피하고,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
- ❸ 유해·위험한 작업,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해체금지 및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시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 ❹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정지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 ❺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안전조치사항(장비유도, 제한속도 등) 준수

* 위 내용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또 다른 안전·보건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적발 즉시 형사·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 **[법위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해발생]** 인력손실, 산재보험료 할증, 공사 지연 등 2차적인 문제 야기

「산업안전보건법」

검색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접속 →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법」 입력
- 고용노동부(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현행법령 →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법」 입력
-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접속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클릭

03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구분	내용
산업 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 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병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 보존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②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보고사항

-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② 조치 및 전망
- ③ 그 밖의 중요사항

(뒤쪽)

작성방법

I. 사업장 정보

- 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 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 명령을 받는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 ④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기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⑦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 ①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 ②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 ③ 같은 종류 업무 근무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과 현직 경력(동일 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직업근무기간]
- ④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으로부터 정기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⑤ 근무형태: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간과 종료시간(동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 시간제: 가족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라.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⑥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증독, 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⑦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관상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⑧ 휴업예상일수: 재해 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발생정보

- ① 재해발생개요: 재해 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간),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 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 넘어짐, 끼임 등)을 했는지를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사이에서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 ①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명,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 불량, 작업표준화 부족, 점검 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적 결함, 규정·매뉴얼 불비·불철저, 안전교육 부족, 지도감독 부족 등)를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 ①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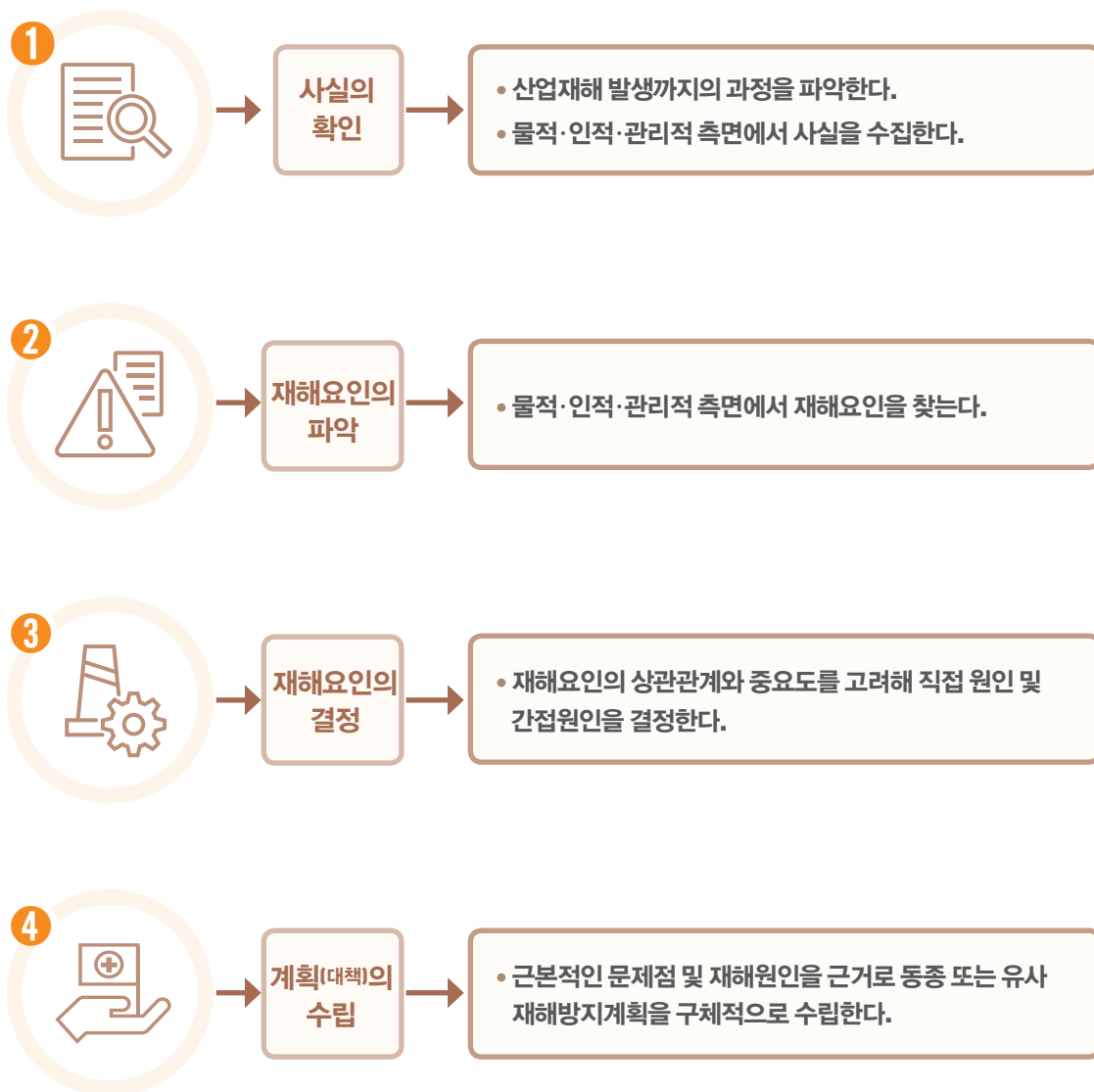
04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3년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합니다.



재해요인 도출 예시

• 재해요인 파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위주로 도출합니다.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인적·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
-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전체적으로 공유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활용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접속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 사례 → 국내 재해사례를 검색하여 재해원인 및 대책을 참조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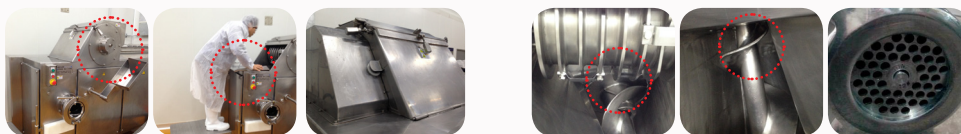
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서식(예시)

재해 재발방지계획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	재해일시	○○.○○	재해자	○○○
재해발생 개요					

피재자는 20○○.○○.○○ 11시 5분경 생산2실에서 오전 작업(돈육제품 절단 및 분쇄)을 마치고, 오후에 진행할 다른 종류의 육제품을 절단 및 분쇄하는 식료품가공기계(믹서기)를 청소 작업(내부 세척 및 스크류에 묻어있던 분쇄육 제거)을 하던 중 면장갑을 착용한 왼손이 분쇄된 제품을 밀어주는 스크류에 말려들어가 절단됨



육류를 절단 및 분쇄하는 믹서기

믹서기 연동장치

믹서기 내부 및 재해 발생 지정 등

* 왼손이 스크류에 말려들어가게 하는 것을 인지한 피재자는 믹서기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작동시켜 스크류의 회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119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음

• 재해발생 원인

- 식료품 가공기계인 믹서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으로 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및 덮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
- 믹서기의 스크류 운전을 정지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끼임 위험이 있는 스크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절단된 육류 제거 작업 실시
- 유해·위험기계·기구 도입시 안전장치(덮개 연동장치) 작동상태 미확인 및 덮개 연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함을 사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 소홀

• 재해방지 대책

- 믹서기 방호덮개 연동장치 동작 정상화
 - 믹서기 가동 중 손 등 신체의 일부가 절단날에 의한 베임재해 및 회전 스크류에 감길 위험이 없도록 방호덮개 개방 시 즉시 전원이 차단되어 가동이 중지될 수 있는 전기적 연동장치(인터록)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청소 및 정비 등의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 끼임 위험이 있는 믹서기의 스크류의 청소, 수리 및 점검(정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
-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 정상작업 뿐만 아니라 정비, 청소 및 보수 작업시 적절하지 않은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끼임, 부딪힘 등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교육 등 실시 및 작업시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조치

* 주 1. 재해발생 개요는 재해발생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육하 원칙에 의거 작성
 2.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은 상호대응이 되도록 작성
 3. 재발방지 대책은 사업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적 대책,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개선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 대책으로 제시

05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및 요양신청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보험 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 받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서비스 절차도

	산재신청	보상	재활(맞춤형통합서비스)
	산재신청	보험급여 지급	요양·재활상담 및 재활서비스 안내
치료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연장, 병원변경 - 상병추가 • 재활서비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에 따른 병원비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지원 • 간병료, 교통비 •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재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상병·전원·병행진료 - 집중재활치료·재활보조기 지급 • 사회심리재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차원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 희망찾기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재활스포츠포츠(수영, 헬스 등) - 취미합동반 • 직장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능력평가·강화프로그램 (작업복귀소견서 포함) - 원직장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재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훈련, 취업준비교육, 재취업상담
치료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화시 재요양 신청 • 작업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에 대한 보상금 • 간병급여 •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 지급 • 작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심리재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응프로그램 - 재활스포츠포츠(수영, 헬스 등) • 합병증 등 예방 관리 지원 • 직장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직장복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 원직장복귀 우수 기업 포상 - 재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훈련, 취업알선(전문기관 연계)

요양신청절차



요양신청절차

0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 목적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 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달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
-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 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에 각 한부씩 제출
- *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 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여부 결정 통지
-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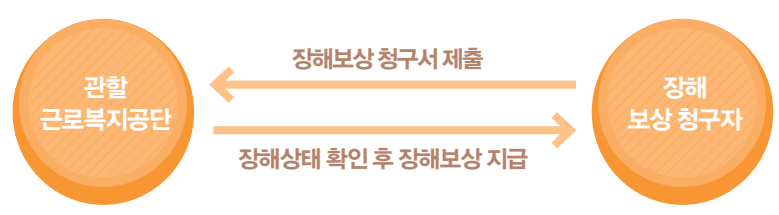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장해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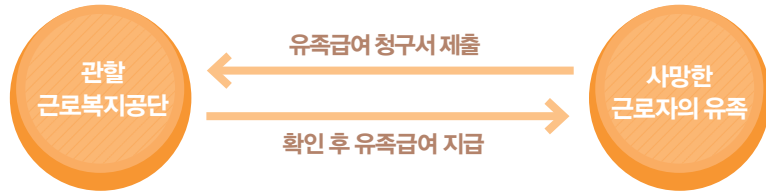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입금을 곱하여 지급되는 보험 급여입니다.



유족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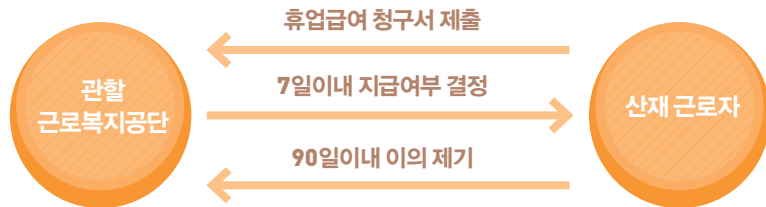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근로자의 사체부검 소견서(사인 미상인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1부
 - 기타 평균임금 및 업무상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세부 참고사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산재보상
- 요양급여 신청서 및 장해보상 청구서, 유족급여 청구서 등의 양식을 다운 로드하여 이용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06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직책·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관리적 사항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선임사실 확인 방법 : 현장에 비치된 선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대상공사

-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 20억원 이상
-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현장에 비치

-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선임보고 확인 방법 : 선임한날 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증명서류 제출

선임방법

대상공사 : 공사금액 별 기준상(안전관리자수, 선임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4 참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적 사항

•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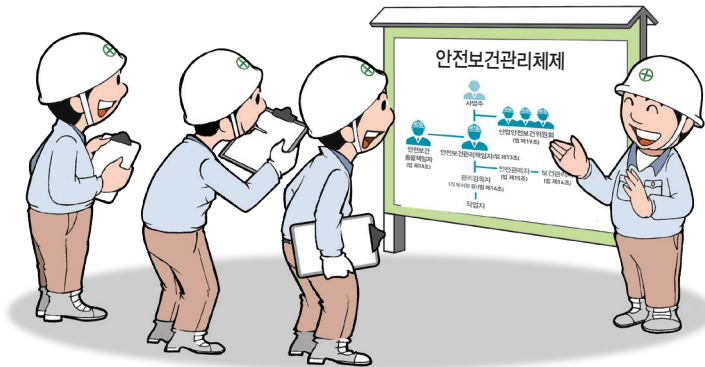
- 선임보고 확인 방법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 증명 서류 제출
-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보건관리자의 수	보건관리자의 선임방법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 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지원 등

배치 및 지원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안전·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합니다.



07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사무직 및 판매업무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사무직 및 판매업무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 외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일용근로자 외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내용(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개별내용(유해·위험 작업별 개별교육등에 관한 교육)
	일용근로자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 이수 ②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이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 기관의 종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절차,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 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교육을 실시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실시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주요
대상작업**

- 밀폐된 장소 용접 또는 습한 장소 전기 용접작업, 맨홀·밀폐공간작업
- 1톤 이상 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및 곤돌라 이용한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 작업
- 전압 75V 이상 정전 및 활선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2m 이상 구조물 파쇄작업
- 2m 이상 지반굴착,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 설치·해체작업, 터널 굴착작업
-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 비계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 5m 이상 건축물 골조, 다리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부재 조립·해체·변경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석면 해체·제거작업
-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등



**교육 일부
면제조건**

- 신규채용 시 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한 경우 면제
-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 관리감독자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 시 해당 연도 면제

**사업주 자체 교육시
강사 자격기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지도자, 산업보건지도사,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참고

교육자료 다운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의 안전보건 자료를 다운받아 교육 시 활용

**공단 강사 및
이동안전교육 활용방법**

무료지원 요청

- 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접속 → 로그인 → 사업장 및 단체교육지원 선택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안전보건 교육일지(예시)

* 교육일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 찾는 자료실 → “교육일지”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교육담당	검토	대표이사
작성일자: 20 년 월 일(: ~ :)				작성자:			
교육의 구분	가.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 바. 기타()교육 *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명	직명	교육실시장소	비고			
특이사항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날인	연번	소속	성명	날인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p>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p>공통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p>작업별 교육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 건설기계(27종)운전,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운송 관련)

건설기계 27종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베탱프랜트
12. 콘크리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향타 및 향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08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 등 유해·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안전시설비·기술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단가계약에 의한 다음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대상액=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의 공사종류가 있는 경우(분리발주한 경우 제외)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 종류를 적용한다.



-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 대상액 x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 x 비율) + 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여 안전관리비 계상
 -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 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상액 대상액 5억원 미만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비율	기초액		
일반 건설공사(궤)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 건설공사(화)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 공사 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90% 미만	90% 이상
사용기준	50% 이상	70% 이상	90% 이상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주요 사용불가 항목

1.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의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신호수 및 유도자의 인건비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 유도·신호수 인건비(유도·신호 등을 전담하지 않는 경우)
 2.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등의 비용
- 비계 및 작업발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 안전난간 및 폭목은 사용가능
 3. 소음, 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 민원을 위한 비용
 4.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에 사용되는 비용
- 무더위, 강추위 보호장구(햇팩, 발열조끼, 쿨토시 등) 구입 가능
-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가능
- 중대재해 목격환 근로자 심리치료 가능
 5.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비용
 6.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와 무관한 행사의 비용 등
 7. 안전교육장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비품(전화기, 냉장고 등) 구매비용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2]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사용명세서 작성 시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사진 등) 첨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요 사항 위반시 처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 발주자(계상의무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 목적 외 사용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용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	법 제72조 제1항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0만원)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	계상하지 않은 금액 (다만,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법 제72조 제5항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목적 외 사용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	법 제72조 제3항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	500	1,000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0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사업장에서 도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하청기업은 그 작업장소가 원청 기업의 사업장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충분한 재해예방조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구성·운영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회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및 그 결과(회의록) 기록·보존(2년)
협의내용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구성

위원장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위원 중 호선(互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 및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별표5 제44호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업 한정) 4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 회의 : 2개월마다 정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 소집
* 건설공사 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및 '산업 안전보건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구성

위원장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위원 중 호선(互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자 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1명)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단,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⑤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 가능

- 회의 : 분기마다 정기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 소집

10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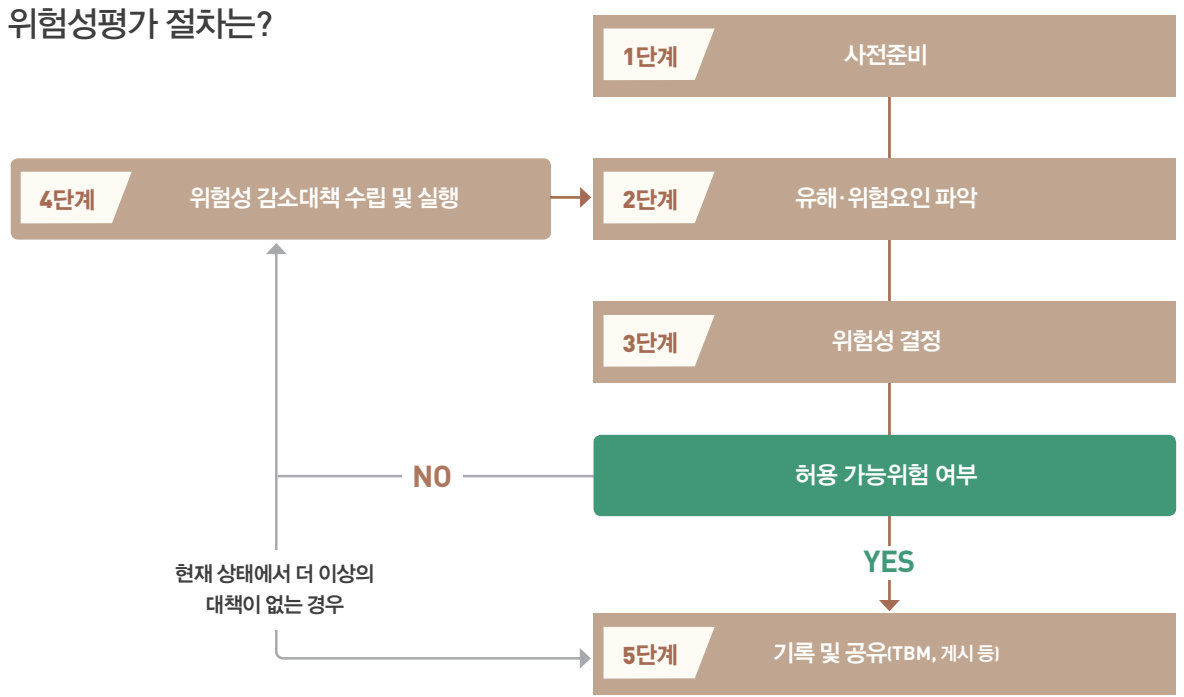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는?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근로자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의 수립에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 절차는?



위험성평가 절차는?

1단계 사전 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단계 유해·위험 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결정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및 결정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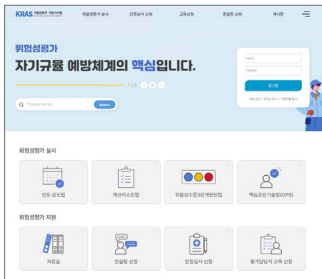
5단계 위험성평가 공유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알리고 해당 작업 종사자에게 공유

*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 (<http://kras.kosha.or.kr/>)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실시
- 인정심사 신청
- 교육 신청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관련서식 자료
- 컨설팅기관 안내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023-19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이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누가

- 사업주의 책임하에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현장 근로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언제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최초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정기평가” 방식으로 시기별 실시
* 상시평가(월·주·일) 활용 가능

어디에서

-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와 관계되는 장소

무엇

- 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화학물질·작업방법 등 근로자에게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 빠짐없이 찾기!

어떻게

-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빈도·강도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도 제시!

왜

- 근로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안전일터를 조성하기 위함!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

현행

개정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제한적

• 정의규정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 평가방법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 적용 곤란

• 평가시기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이후 시기 모호

[정기평가] 최초 평가 후 1년마다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

• 근로자 참여 제한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

•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 정의규정 명확화

부상·질병 가능성의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 평가시기 명확화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상시평가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 전(全)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11

안전·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사업장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98조

안전·보건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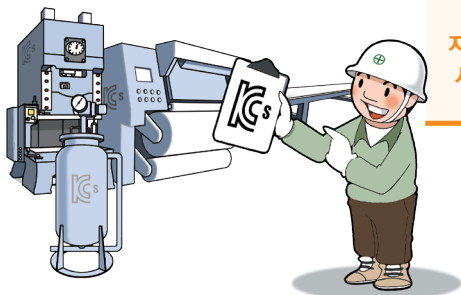
작업장 순회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주기 :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인 사업주)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반 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 • 점검주기 :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인증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의 인증관련 서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등 9품목 - 과부하방지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가설기자재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21품목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 신고증명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삭기, 파쇄기, 고정형 목재가공기계 등 10품목 - 자동전격방지기, 연삭기 덮개,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제외) 등 10품목

안전검사

안전검사 대상기계·기구의 인증관련 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정격하중 2톤),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등 13품목 * 안전검사 면제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 • 안전검사 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최초 설치 날부터 6개월마다 (건설현장) - 기타품목 : 최초 설치 날부터 3년 이내, 그 이후 부터 2년 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관련 서류확인(인정유효기간 : 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12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 지급·착용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하며,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선창작업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각종 보호구 사진



1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입니다. 사업주는 MSDS 정보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미리 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지를 부착하며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대상 화학물질은 제외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구성항목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2 유해성·위험성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4 응급조치 요령
-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9 물리·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 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규제 현황
- 16 그 밖의 참고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요 내용
MSDS 제공	양도 제공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MSDS에 반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MSDS 게시·비치	취급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MSDS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려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경고 표시	양도 제공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은 방법 외의 방법(예 : 파이프 라인, 탱크코리더)으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별도 제공하여야 합니다.
	취급 하는 자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MSDS 교육	취급 하는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고 교육 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명	Cas No.	KE No.	UN No.	EU No.
메틸 알코올	67-56-1	KE-23193	1230	200-659-6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메틸 알코올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 정보(수입품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회사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
긴급전화번호	052-703-0000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 :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1
---------------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그림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문구

H225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1 : 흡입하면 유독함

14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 및 실시시기

- 건강진단 종류 및 실시시기

종류	대상	시기
일반건강진단	• 상시 사용 근로자(주거적으로 실시)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된 후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마다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가 그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업무 적합성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 의심 증상 또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시
임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지체없이 실시

• 건설업 주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석면	12개월 이내	12개월
분진(광물성),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용접 흄, 진동 등	6개월 이내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주기 1/2 단축

- 작업환경 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 특수·임시건강진단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15

지방고용노동 관서 감독 진행 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케하여 서류 확인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 후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게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사업장 감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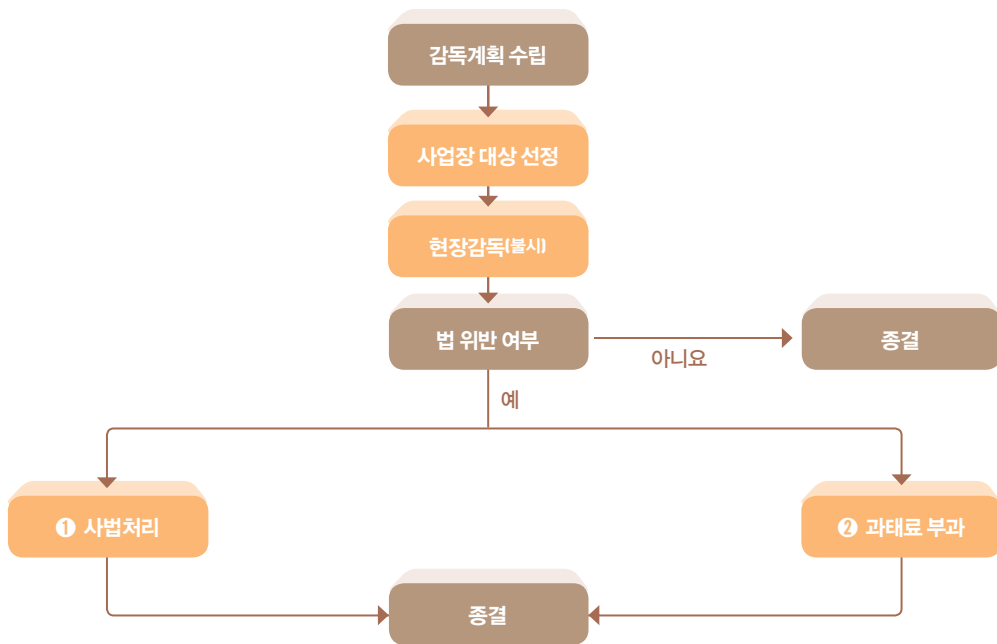
사법처리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결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발견 시
 - 사업장 관계자 조사 → 입건(범죄인지 보고) → 피의자 신문(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건을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결과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법 위반사항 발견 시
 -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결정 →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

*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 또는 의견진술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시



1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부과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시행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 기계·기구·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떨어짐 위험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기업의 손실은?

- 형벌 또는 과태료
 -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최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해발생 시
 - 인력 손실, 산재보험료 할증, 민사보상, 생산 차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내용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2.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3.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500	500	500
		2) 제37조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75조에 따라 구성된 노사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4.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5.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2)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6.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7.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2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	100	150
8.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	20	50

위반내용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9.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1)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2)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3)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300	300
10. 법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을 위반 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제3호	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2)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3) 법 제4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00 20	1,000 20	1,000 20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했으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300 20	600 20	1,000 20

* 상기 기준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음을 유의(개별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참조)

17

휴게시설 설치의무

2021.8.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시행

- 2022.8.18.부터 시행하되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3.8.18 시행

제재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

-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는 아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1.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2.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설치·관리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별표 21의2]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 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1)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28°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4호의 기준

3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0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75
- 0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80
- 03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81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 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 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
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사항 보관방법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
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상기 조치 등의 이행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수강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안전보건교육 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주는
미해당)
※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여부(법 제4조 및 제5조)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만으로도 교육대상'이 됨

교육 시간

-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수강

교육실시 기관

-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
- ※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수강자가 부담

교육 연기요청

- 교육 통보를 받았지만 해당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 연기 요청 가능(1회에 한함) →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 통보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7조 및 별표4]

위반행위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수확인서

- 교육완료 후 필요 시 교육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요청 가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대상

-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사업장

공표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라는 제목
- 해당 사업장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 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 공표 전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내용 통지 →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기회 주어야 함(30일 이상 기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공표 방법 및 기간

- 관보,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공표기간 1년)

손해배상의 책임
[법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가능함

0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보호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부터 시행)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재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p>*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p>
의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 ①·④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의 안전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p>→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p>
처벌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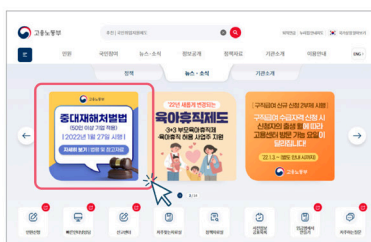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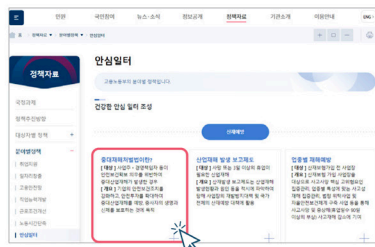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보도자료, 참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게시한 누리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연결방법

- 1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메인화면 연결배너 **클릭**



- 2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책자료 → 안심일터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가기 **클릭**



- 3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 1 자주 찾는 메뉴 → 중대재해처벌법 **클릭**
- 2 팝업존 → 연결배너 **클릭**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화면



연결 배너 이미지



4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작업공종



- 01 철근콘크리트 공사(떨어짐) 83
 - 02 철근콘크리트 공사(무너짐) 84
 - 03 건설기계 관련 작업(부딪힘, 끼임, 맞음) 85
 - 04 비계 등 가설구조물공사(떨어짐, 무너짐) 87
 - 05 철골조립공사(떨어짐, 맞음) 88
 - 06 조적, 미장, 방수공사(떨어짐, 산소결핍) 89
 - 07 화물운반 작업(교통사고) 90
 - 08 토공사(무너짐 및 부딪힘) 91
 - 09 지붕공사(떨어짐, 물체에 맞음) 92
 - 10 외부 도장공사(떨어짐) 93
 - 11 상·하수도 공사(무너짐, 부딪힘, 맞음) 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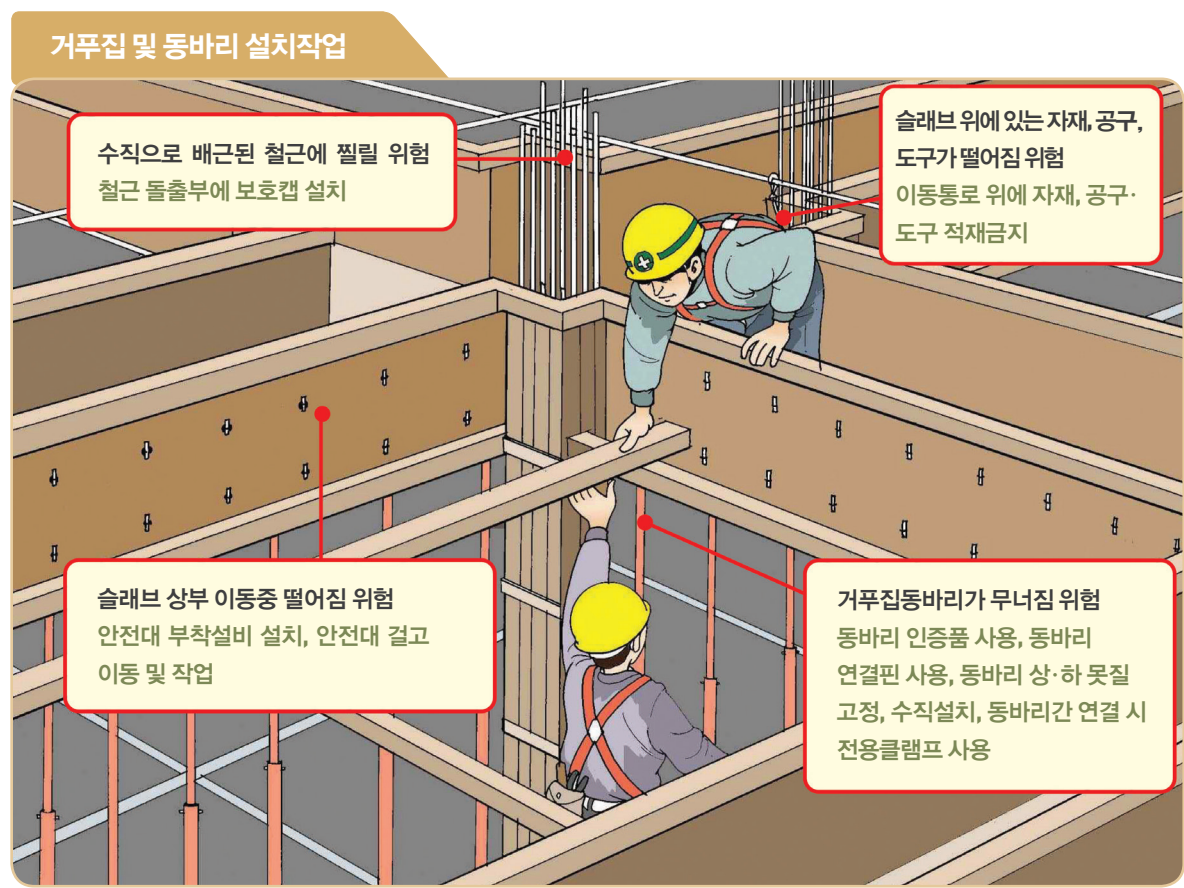
01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떨어짐)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철근콘크리트 작업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슬래브 및 보 거푸집 설치 작업 또는 상부 이동 중 안전대 미착용, ②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작업

수직으로 배근된 철근에 찢릴 위험
철근 돌출부에 보호캡 설치

슬래브 위에 있는 자재, 공구,
도구가 떨어짐 위험
이동통로 위에 자재, 공구·
도구 적재금지

슬래브 상부 이동중 떨어짐 위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걸고
이동 및 작업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짐 위험
동바리 인증품 사용, 동바리
연결핀 사용, 동바리 상·하 못질
고정, 수직설치, 동바리간 연결 시
전용클램프 사용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슬래브 및 보 거푸집 상부로 이동 중에는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 실시
- 02_ 떨어질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작업 중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02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무너짐)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철근콘크리트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무너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미실시, ② 2단 이상 구조로 조립, ③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조립
- 02_ 2단 이상 구조(서포트+각재+서포트 등)의 거푸집동바리는 설치 금지
- 03_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골고루 분산타설하여야 하며, 하부에 감시자를 두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보강조치 실시

03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종

건설기계 관련 작업(부딪힘, 끼임, 맞음)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건설기계 작업 중 부딪힘, 끼임, 맞음 및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작업유도 및 신호 미실시, ② 기계장비의 결함, ③ 위험구간 근로자 접근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자재하역, 양중 및 운반 작업

떨어지는 자재에 맞을 위험
자재는 2줄걸이로 수평으로 인양, 와이어로프 상태 점검

이동식크레인불대넘어짐위험
방호장치 점검 및 손상부위 사전 점검

지게차 운전 미흡
운전원의 자격 여부확인

하역 작업 중 부딪힘 위험
유도자 배치 및 운행구간 접근 금지

천공, 굴착, 토사 반출 작업

항타기 운행 중 부딪힘 및 넘어짐 위험
유도자 배치 및 보호구 착용

굴삭기 후면부 부딪힘 위험
접근금지

토사운반차량 과적
운전원 자격여부 확인 및 과적금지

덤프와 백호에 끼임 위험
유도자 지정 및 위험구간 접근금지

03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중

건설기계 관련 작업(부딪힘, 끼임, 맞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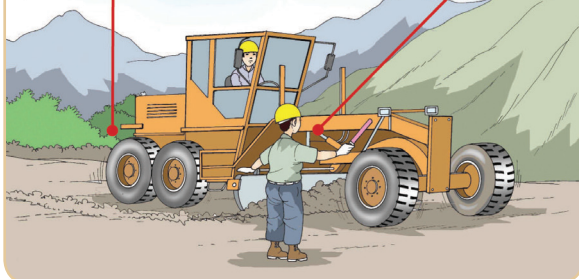
건설기계 사용 작업

롤러 후진 중 부딪힘 위험
작업유도자 배치 및 유도



롤러 작업 중 끼임 위험
롤러 후면 경광등 설치

토공기계와 근로자
부딪힘 위험
토공기계 운행경로
설정, 보행자 통로 지정



유도자 부딪힘 위험
신호체계수립, 식별용
복장착용, 안전구역위치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자재하역, 자재 양중 및 운반 작업과 지반 천공, 굴착작업 및 토사 반출 작업 중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시에는 위험 작업구간에 근로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
- 02_ 작업유도자신호수 배치 시 작업유도자신호수는 식별용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전구역에서 작업을 유도, 신호
- 03_ 건설기계 작업 전 건설기계의 방호장치, 용접부위 및 이음부 등 자체 결함여부 사전 점검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04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중

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떨어짐, 무너짐)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비계 등 가설구조물 작업 중 떨어짐 및 무너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작업 발판 설치불량, ②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벽이음, 아웃트리거 등 무너짐 및 넘어짐 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외부 쌍줄비계 작업

떨어지는 자재에 맞을 위험
이동통로 위에 자재적재 금지, 안전모 착용, 상·하 동시작업 금지

비계 무너짐 위험
발판 위에 400kg 이하로 적재, 기둥 설치간격 (장선방향 : 1.5m 이내, 띠장방향 : 1.85m 이내) 준수

이동 시 떨어짐 위험
안전난간 설치, 승강통로(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발판 고정 설치

이동식 비계 작업

상·하이동 중 떨어짐 위험
승강 사다리설치, 안전대 착용

상부 작업 중 떨어짐 위험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상부 작업 시 비계가 움직일 위험
아웃트리거 설치, 바퀴에 구름방지장치(스토퍼) 부착

상부 작업 시 재료, 공구, 도구 떨어짐 위험
재료, 공구 등은 달기로프 및 포대를 사용하여 상·하이동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비계 등 가설구조물에서 이동 및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 발판을 견고하고, 비어있는 곳 없이 설치
- 02_ 작업발판 단부에는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 및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 03_ 비계, 이동식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을 기준에 따라 견고히 설치

05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중

철골 조립공사(떨어짐, 맞음)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철골구조물, 흠막이 가시설 등 철골 설치작업 중 떨어짐 및 맞음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추락방호망 미설치, ② 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③ 인양 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철골 조립 작업		흠막이 가시설 작업	
<p>철골(H-빔) 인양작업 시 떨어짐 위험 안전한 와이어로프 사용, 2줄걸이 결속, 하부 인원 통제</p>	<p>철골 상부작업 시 떨어짐 위험 수직·수평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필요 시 2줄 안전대 착용, 추락방호망 설치</p>	<p>H-빔 위에서 이동작업 중 떨어짐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걸고 이동 및 작업</p>	<p>흠막이 버팀보 위에 적재된 자재·공구 등 떨어짐 위험 버팀보 위 자재 적재금지, 볼트자루 등은 양중박스 사용</p>
<p>기둥 철골 승·하강 시 떨어짐 위험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걸고 상·하 이동</p>	<p>자재, 공구, 도구 떨어짐 위험 철골 위에 방치 금지, 볼트자루 등은 전용 인양박스 사용, 하부 인원 통제</p>	<p>용접작업 중 감전 위험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파손된 홀더(손잡이) 사용금지, 보안면, 용접장갑 등 보호구 착용</p>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눈으로 봐도 가장 위험한 건설작업이 바로 철골 작업이므로 작업장 하부에는 추락방호망 설치
- 02_ 철골 위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 실시
- 03_ H-Beam 등 철골자재를 양중할 때에는 사전에 줄걸이 방법, 체결상태 확인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질 위험구간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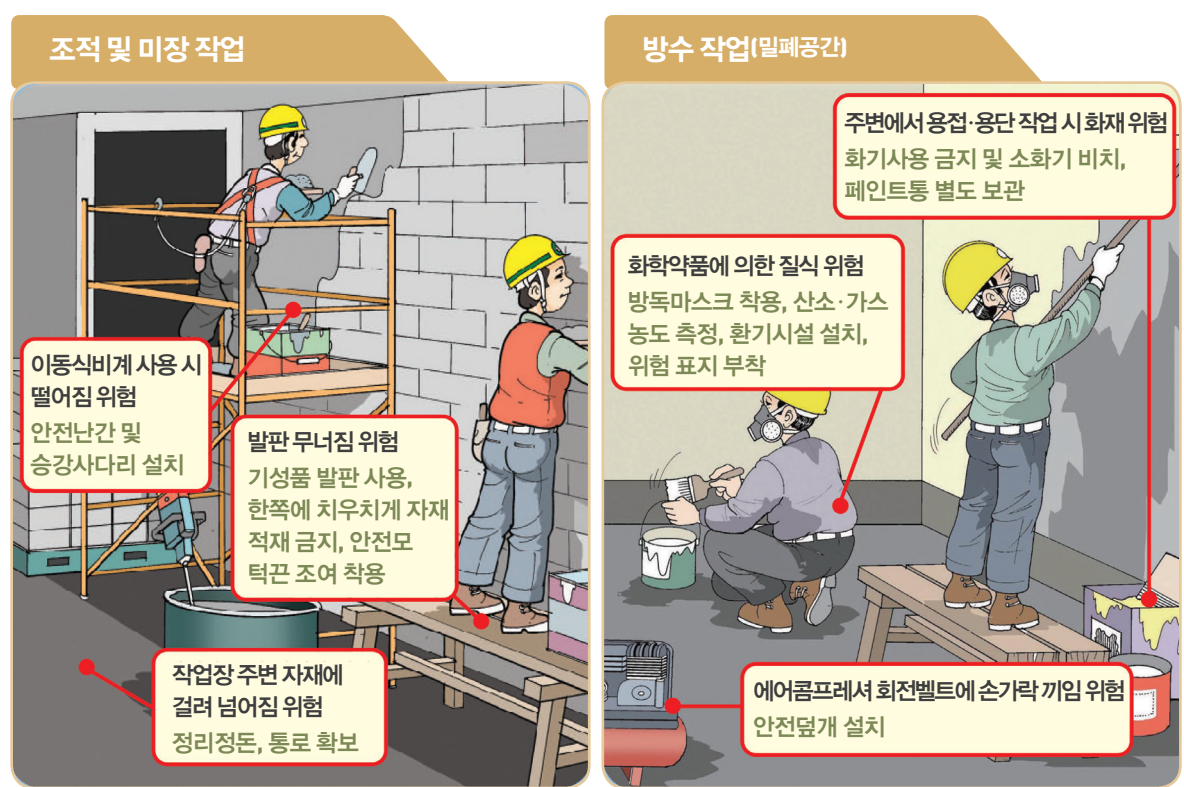
06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종

조적, 미장, 방수공사(떨어짐, 산소결핍)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조적, 미장, 방수작업 중 떨어짐 및 질식(산소결핍)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작업발판 설치불량, ② 정리정돈 불량, ③ 밀폐공간 작업전·중 계속 환기 미실시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미장 및 조적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은 튼튼하게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 및 말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확보
- 02_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03_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 시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산소결핍 및 화재폭발 재해 예방

07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중

화물운반 작업(교통사고)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건설현장의 화물운반작업 중 도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안전 운전 의무위반(과속, 신호 미준수 등), ② 작업장 전방 안전표지판 설치 불량, ③ 신호작업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화물운반 작업



도로 유지, 보수 공사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화물운반작업을 위한 도로 주행 시 규정속도 준수, 안전띠 착용 및 교통 신호 준수
- 02_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공사 시 전방에 공사확인 안전표지판 설치 및 차량 유도물 설치
- 03_ 화물운반작업, 도로교통 신호 시 신호수는 신호봉, 식별용 조끼 착용 하고 안전 구역에 위치

08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종

토공사(무너짐, 부딪힘)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토공사 작업 중 무너짐 및 부딪힘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건설장비에 부딪힘, ② 굴착작업 시 기울기 미준수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절, 성토 작업



건설기계(굴착기, 도저, 덤프 등) 운전원 장비 운전 미숙 위험
해당 장비 운전면허 소지

건설기계 후진 또는 회전 시 주변 근로자 부딪힘
위험반경 내 출입금지

가설도로 가장자리로 장비 굴러 떨어짐 위험
접근금지 경계선 준수

경사면 무너짐 위험
부석 발생, 경사면에 금이 가거나 밀리면 접근 금지
(비온 뒤 위험도 상승)

지반 굴착작업



중장비와 부딪힘 위험
면허소지자 운전, 신호수 지시 준수, 경광등 및 경보음 장치 부착, 접근 위험표지 부착,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굴착 경사가 급해 무너짐 위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
보통흙 - 습지 1:1~1:1.5
- 건조 1:0.5~1:1
암반 - 풍화암 1:1.0
- 연암 1:1.0
- 경암 1:0.5

굴착기 버킷이 연결부에서 탈락되면서 떨어짐 위험
버킷 안전핀 체결, 안전모 착용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건설기계장비의 부딪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 및 근로자는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
- 02_ 지반 굴착작업 시 굴착경사가 급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흙막이가시설 설치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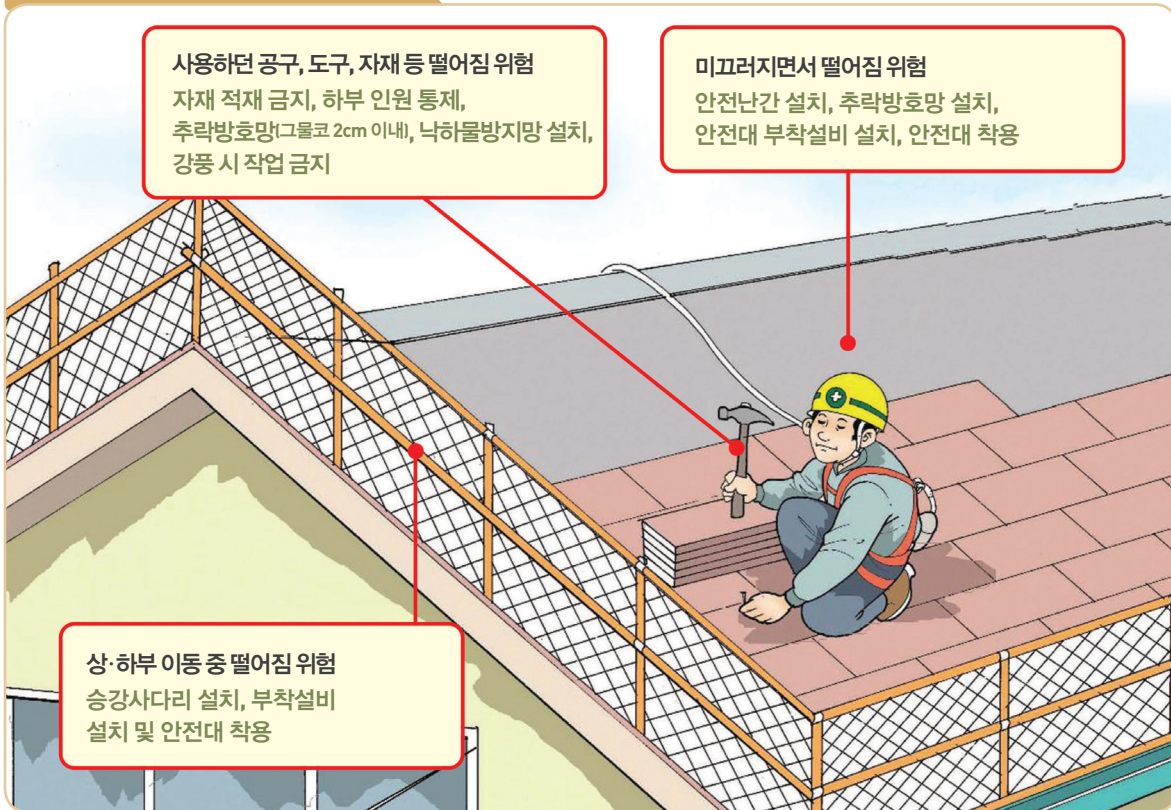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중

지붕공사(떨어짐, 물체에 맞음)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경사지붕 등 마감작업 중 떨어짐 및 맞음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② 안전대 미착용, ③ 자재 적치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경사 지붕 작업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경사 지붕공사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작업 전 지붕 단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
- 02_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떨어짐 위험 방지
- 03_ 경사지붕에서 사용하던 공구, 도구나 쌓아 놓은 자재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호망(그물코 2cm 이내)이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 하거나 위험구간 출입을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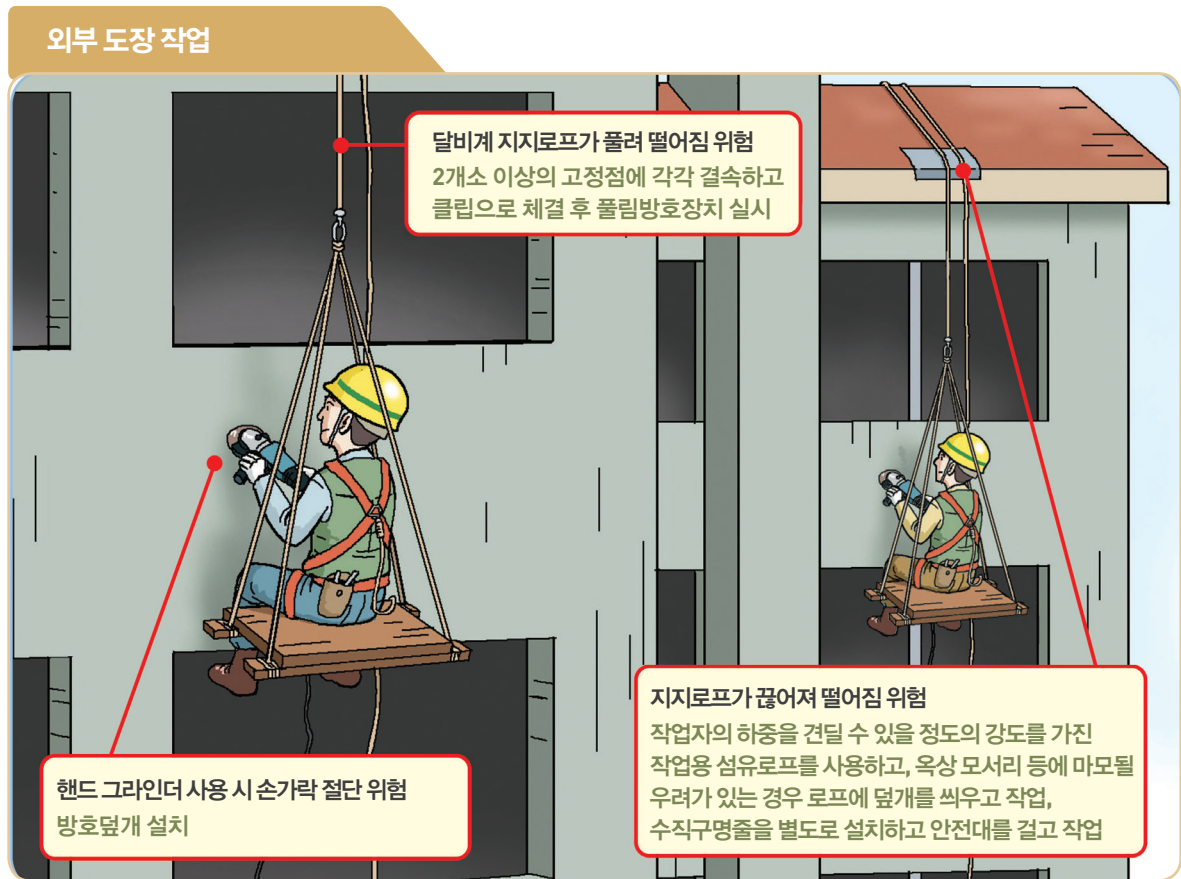
10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종

외부 도장공사(떨어짐)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외부 도장, 도색 작업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 달비계 로프가 풀리거나 끊어짐, ② 수직구멍줄 미설치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달비계 지지로프가 풀리거나 끊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상부에 2개소 이상의 고정점에 각각 결속하고 클립으로 체결 후 풀림방지조치 실시
- 02_ 작업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를 사용하고, 옥상 모서리 등에 마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로프에 덮개를 씌우고 작업
- 03_ 달비계 작업 시에는 수직구멍줄을 별도로 설치하여 작업자가 수직구멍 줄에 추락(떨어짐)방지대를 걸고 작업하여 떨어짐에 의한 재해 예방

11

사망재해 다발 작업공중

상·하수도 공사(무너짐, 부딪힘, 맞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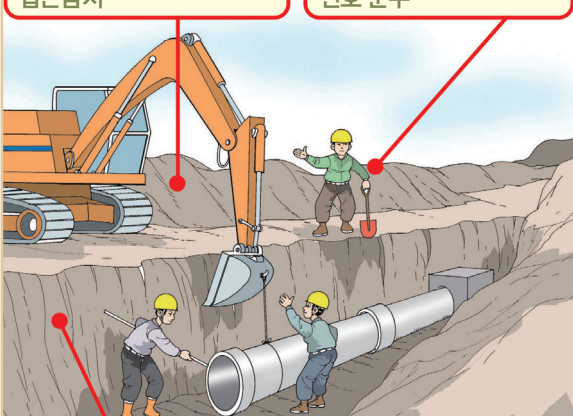
사망재해는
이렇게 발생합니다.

- 상·하수도 공사의 관로 부설작업 및 도로 포장작업 중 토사 무너짐, 건설 장비 부딪힘, 인양화물 맞음 재해는 ① 굴착면 기울기 기준 미준수, ② 신호수 미배치, ③ 줄걸이 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관 부설 작업

굴착면 끝단에 중장비 접근 시 장비 무게 및 진동에 의해 굴착면 붕괴 위험
장비 앞 굴착면에 근로자 접근금지

굴착면 내부 근로자가 장비 운전자 위치에서 안보일 경우 버킷에 부딪힘 위험
장비 운전원은 유도자의 신호 준수




경사면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한 경우 토사 붕괴 위험
굴착면 경사를 자연 경사에 가깝게 굴착

도로 포장 작업

후진하는 장비에 부딪힘 위험
장비 작업 반경에 관계 근로자에 출입금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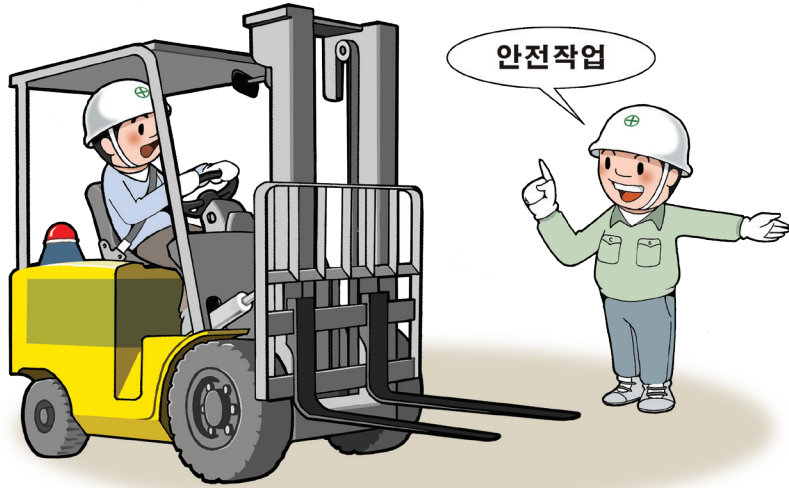
신호수 역할이 소홀할 경우 장비에 부딪힘 위험
복장을 갖추고 신호 역할 전담



후진 시 경보음 미작동
운전원은 작업 전 브레이크, 클러치, 경보음 등 확인

사망재해 예방 대책

- 01_ 관로 부설을 위한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토사 붕괴를 방지
- 02_ 도로 포장을 위한 건설기계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부딪힘 재해를 예방
- 03_ 관로 운반 시 2줄 걸이로 균형을 잡고 운반하여야 하며 양호한 상태의 로프를 사용(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5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대책



- 01 철근콘크리트 공사 97
 - 02 철골조립 공사 97
 - 03 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 98
 - 04 조적·미장·방수 공사 98
 - 05 도로보수 작업 99
 - 06 건설기계 관련 작업 99
-

01

사망재해 다발 사례와 대책

철근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무너짐



 재해 사례

- 방수터널 암거 벽체 및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동바리 무너짐
- 거푸집동바리단상(2단) 구조 : P/SIV6) + 각재 + 목재 동바리

 예방 대책

- 높이 6m 이상의 거푸집동바리는 System Support 등 안전한 구조 적용
-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후 조립도에 의해 조립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는 4개 이상의 볼트로 체결
- 타설 시 설계도서에 따라 벽체 타설 및 양생 후 → 슬래브 타설 등 순서 준수

02

사망재해 다발 사례와 대책

철골조립 공사

띠장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재해 사례

- 띠장 위에서 작업 중 약 7.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짐

 예방 대책

-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 부착시설에 걸어 사용
- 추락방지용 추락방호망 설치

03

사망재해 다발 사례와 대책

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

학교건물 비계에서 조적작업 중 비계 무너짐



재해 사례

- 학교 건물 외벽 쌍줄비계 위에서 조적작업을 하던 중 적재하중 초과, 비계 벽이음 불량 등으로 비계 무너짐

예방 대책

- 강관비계 조립 시 밀등잡이, 벽이음 등 설치기준 준수
 - 비계기둥 및 띠장 등 부재 조립간격 준수
-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초과금지 등 적재하중 기준 준수

04

사망재해 다발 사례와 대책

조적·미장·방수공사

터널벽체에 프라이머 도장 작업 중 질식



재해 사례

- 개착터널 외부 측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장작업 중 프라이머에 함유된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질식 사망

예방 대책

-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 중 환기설비 설치
 - 국소배기장치가 어려울 경우 급·배기팬을 이용하여 환기 실시
- 유기화합물 취급작업 시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지급·착용
 - 밀폐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 사용불가 송기마스크만 가능
- 관리대상물질 취급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05

사망재해 다발 사례와 대책

도로보수 작업

균열도로 보수를 위해 포장작업 중 롤러에 부딪힘


 재해 사례

- 기존도로 균열 보수를 위해 포장작업 후 롤러로 다짐작업 중 아스콘 청소작업 중인 피재자가 롤러에 부딪혀 사망

 예방 대책

- 작업 유도자를 배치한 상태에서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 실시
- 작업 위험구간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 롤러의 후사경은 수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교체

06

사망재해 다발 사례와 대책

건설기계 관련 작업

고소작업대 붐이 파손되어 꺾이면서 떨어짐


 재해 사례

- 건물 5층 외벽에 LED 조명 등 설치를 위해 고소작업대에 탑승, 고소작업대의 붐을 인출하던 중 붐이 파손되어 꺾이면서 떨어짐

 예방 대책

- 고소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붐·작업대 등의 각 부위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보강 또는 교체 등의 수리 후 작업 실시
-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대 등의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대를 걸고 작업 실시)
- 고소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

6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 01 안전보건공단 101
- 02 고용노동부 102
- 03 근로복지공단 103



01

재해예방관련
기관 현황(참조)

안전보건공단

기관명	기관별 주소	대표전화	팩스
안전보건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성안동)	1644.4544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성안동)	1644.4544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성안동)	1644.5656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성안동)	1644.4544	-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성안동)	1644.4544	-
서울광역본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9층	02.6711.2800	02.6711.2820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04	033.243.8315
서울남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길 8, 8층	02.6924.8700	02.6924.8729
서울동부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135, 4층	02.2086.8000	02.2086.8019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정관빌딩 3층	033.820.2580	033.820.2591
부산광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051.520.0510	051.520.0519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정동로 83, 2, 4층	052.226.0510	052.260.6997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	055.269.0510	055.269.0590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통합청사 4층	055.371.7500	055.372.6916
광주광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빌딩 8,9,11층	062.949.8700	062.949.8708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4층	063.240.8500	063.240.8519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공사 B/D 7층	061.288.8700	061.288.8777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	064.797.7500	064.797.7518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063.460.3600	063.460.3650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00	061.689.4990
대구광역본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 21층	053.609.0500	053.421.8622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054.478.8000	054.453.0108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빌딩 5층	053.650.6810	053.650.6820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054.271.2013	054.271.2020
인천광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032.510.0500	032.574.6176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 13층	031.259.7149	031.259.7120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41.4900	031.878.1541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7, 8층	031.995.6581	031.995.6585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032.680.6500	032.681.651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천혜제일빌딩 2층	031.481.7599	031.414.3165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 소곡회관 2층	031.785.3300	031.785.3381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042.620.5600	042.636.5508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KT 3층	043.230.7111	043.236.0371
충북북부지사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043.849.1000	043.857.0755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	041.570.3400	041.579.8906

02

재해예방관련 기관 현황(참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연번	기관명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연번	기관명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044.202.7114	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051.860.0009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2.2231.0009	24	부산동부지청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051.559.6688
2	서울강남지청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02.584.0009	25	부산북부지청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덕포동)	051.309.1500
3	서울동부지청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02.403.0009	26	창원지청	경남 창원시 성삼구 창이대로 532번길 28	055.239.6500
4	서울서부지청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3층,5층	02.713.0009	27	울산지청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옥동)	052.272.0009
5	서울남부지청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2.2639.2100	28	양산지청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석산리)	055.387.0009
6	서울북부지청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02.950.9880	29	진주지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 43	055.752.0009
7	서울관악지청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	02.3281.0009	30	통영지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055.650.195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4층	032.460.4545	3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범어동 734)	053.667.6200
9	인천북부지청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032.540.7910	32	대구서부지청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053.605.9000
10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 석천로 207	032.714.8700	33	포항지청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대잠동)	054.271.6700
11	의정부지청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031.877.0009	34	구미지청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임수동 92-31)	054.450.3500
12	고양지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031.931.2800	35	영주지청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054.639.1111
13	경기지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031.259.0204	36	안동지청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00
14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031.788.1505	3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062.975.6200
15	안양지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031.463.7300	38	전주지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인후동 1가) 고용노동부종합청사	063.240.3400
16	안산지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031.412.1992	39	익산지청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어양동 626-1)	063.839.0008
17	평택지청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층	031.646.1114	40	군산지청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조촌동 852-1)	063.452.0009
18	강원지청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033.269.3551	41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061.280.0100
19	강릉지청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	033.650.2500	42	여수지청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웅천동)	061.650.0108
20	원주지청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	033.769.0800	4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둔산동)	042.480.6290
21	태백지청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2.0009	44	청주지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043.299.1114
22	영월출장소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033.374.0009	45	천안지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041.560.2800
				46	충주지청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3-3	043.840.4000
				47	보령지청	충남 보령시 옥마로 42	041.931.6640
				47	서산출장소	충남 서산시 쌍연남1로 37, 3층	041.661.5630

03

재해예방관련 기관 현황(참조)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지역	기관명	관할구역	지역	기관명	관할구역
서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	경북	포항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서울강남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미지사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석적읍 중리 348~525-8 (구미국가산업단지 지역에 한함)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송파구·광진구·강동구		경산지사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청도군
	서울서부지사	서울특별시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영주지사	경상북도 영주시·상주시·문경시·봉화군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안동지사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 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수원지사	경기도 수원시
	서울관악지사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		화성지사	경기도 화성시
	서울서초지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용인지사	경기도 용인시·여주시·이천시
서울성동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택지사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부산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	경기	부천지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
	부산동부지사	부산광역시 금정구·동래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부산북부지사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강서구		안산지사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부산중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연제구		고양지사	경기도 고양시
대구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남구·수성구·달성군	파주지사	경기도 파주시	
	대구북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서구 경상북도 군위군·칠곡군 (석적읍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성남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양평군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	의정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인천	경인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옹진군	남양주지사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	
	인천북부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충북	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증평군·보은군
광주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 전라남도 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		충주지사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광산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장성군·영광군·함평군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강원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충남	보령지사	충청남도 보령시·부여군·서천군·청양군·홍성군
	춘천지사	강원도 춘천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서산지사	충청남도 서산시·당진시·예산군·태안군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고성군	전북	전주지사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무주군
	태백지사	강원도 태백시·삼척시		익산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
	영월지사	강원도 영월군·평창군·정선군		군산지사	전라북도 군산시·부안군·고창군
대전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중구·서구·대덕구	전남	목포지사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장흥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진도군·신안군
	대전동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옥천군·영동군		여수지사	전라남도 여수시·광양시
	대전서부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		순천지사	전라남도 순천시·고흥군·보성군
울산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제주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경남	창원지사	경상남도 창원시·창녕군·함안군·의령군			
	양산지사	경상남도 양산시·밀양시			
	김해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진주지사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합천군·거창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남해군			
	통영지사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고성군			

출근에서 퇴근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중대재해 발생의 65.4%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



4 고소작업대

2 지붕

1 비계

3 사다리

6 차량계 건설기계 등 방호장치 및 안전조치

- 이웃트리거
- 해지장치
- 고임목
- 후방카메라
- 후방영상 표시장치

5 철골

추락 (41.6%)

7 혼재작업

8 충돌방지조치



신호수 배치



접근금지

끼임 (14.0%), 부딪힘 (9.8%)

2023-건설안전실-171

고객님의 소중한 평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래 설문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x. 052-703-0322

귀하께서 근무하는 회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업종

- 제조업
- 운수·창고·통신업
- 건설업
- 임업·어업·농업·광업
- 서비스업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금융 및 보험업

규모

- 5인 미만
- 5~19인
- 20~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귀하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 사업주
- 안전·보건 관리자
-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 관리 감독자
- 노동자
- 기타

본 자료가 사업장 현장 적용 등 재해예방활동에
도움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본 자료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 디자인·편집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내용 구성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전반적 만족도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본 자료에 대한 장점 또는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간략히 작성 바랍니다.(20자 이내, 키워드 위주 작성)

자료명 : 안전보건 나침반 건설업

의견 :

소중한 의견을 당첨의 기쁨으로 돌려드립니다!

경품추첨 2023년 10월 이후 * 경품 내용과 추첨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경품 추첨일 이후 문자로 개별안내 드립니다.

이름	전화(휴대전화)
경품 받으실 주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안전보건 콘텐츠 만족도 측정, 경품 추첨 및 우편발송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② 수집·이용 개인정보 항목

이름, 전화번호(휴대전화), 회사명, 회사주소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당해연도(경과 시 일괄폐기)

상기 내용을 읽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동의 시 체크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셔야 경품증정 등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알아야 할 안전보건정보

안전보건 나침반 2023 개정판

건설업

발행일	• 2023년 6월[개정 12판]
발행인	• 안종주
발행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성안동)
총괄기획	• 교육혁신실 장경부, 정정자, 심경진
편집디자인	• 필드가이드 Tel 02.6375.2665

이 교재는 안전보건공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 편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금하며, 자료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업무상 이익제기 등 소명자료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 나침반은

일터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단의 주요 사업안내 및 직업건강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의견 채택 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2023 안전보건 나침반
온라인 설문조사 바로가기